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을 ‘신청일이 속하는 달’에서 ‘납부기한이 속하는 달’로 변경함(안 제92조제3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